래미안 마포 리버웰(용강2) 입주자 모집공고

분양문의 02)792-2929 www.raemian.co.kr

래 미 안 | 마포 리버웰

래미안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이속지문 안전 착오항목 등에 대하여는 청약 전에 확인하기 있으니 이점 유의하십시오.

① 본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하 '본 규칙'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민영주택 및 제2조 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 중형주택(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민영주택)으로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주택법」 제2조 제1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 위치하지 않는 지역에 위치하지 않는 민영주택이다.

② 주택공급 및 계약방법

- 본 주택은 민간주택에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으로 최초 주택공급 계약체결일 기준 분양가격이 1억원은 초과하는 주택이다.
- 본 주택은 2022. 9. 1.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 또는 민영주택으로 주택허가, 분양승인, 사업계획 승인 등을 받은 주택이 아니라 사업계획 승인 등을 받은 주택이다.

③ 주택공급 및 계약방법

- 본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1호 가목 및 「주택법」 제2조 제5호 가목에 따른 공공분양주택이다.
- 본 주택은 「주택법」 제2조 제1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 위치하지 않는 지역에 위치하지 않는 민영주택이다.

※ 2009. 4. 1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주택의 종류가 분양주택과 기존주택(분양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으로 이원 유형화되어 청약신청 방법 등이 상이하게 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본 모집공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2022. 2. 21)에 따라 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의 무주택세대구성원 및 일반시 최대한도 주택청약 주택배정 비율 우선 배정됨

※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결제원 (www.yeskey.or.kr) 또는 주택공급규칙에 대한 유권해석은 국토교통부 (www.molit.go.kr)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과 관련 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마포구청 주택과 - 27811(2022. 3. 22)로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서울특별시 마포구 용강동 285번지 일대 도시개발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 공급규모 및 내역 : 아파트 지하 3층, 지상 28층 ~ 29층 외 19동 총 563세대(일반 97세대 포함) 중 아파트 일반공급 115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일반) 특별공급 5세대, 다자녀 무주택 세대주 특별공급분 3세대, 신혼부부 특별공급분 2세대,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분 1세대 포함

※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 별첨 참조

주택형	아파트의 크기 (주거전용면적)	주택형에 따른 공급세대 수				세대별 대지지분	공급금액 (단위 : 원)								기산금리 (%)
		세대별 개별면적					계약금(10%)		중도금(60%)				잔금(30%)		
		주거전용	주거공용	소계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	계약면적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일반 특별공급					계약금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잔금	
다자녀 무주택 세대주 특별공급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입주지정일	
신혼부부 특별공급		사용허가시 : 2주 이내					계약금	중도금						잔금	
		사용허가시 : 2주 이내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입주지정일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계약금	중도금						잔금	
		사용허가시 : 2주 이내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입주지정일	
합계		2	1	2	1	1									

※ 주택형별 특별공급분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받았으며, 배정분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 주택형별 일반공급 주택형과 관련 규칙 제26조 제2항 : 5세대 / 3세대 / 2세대 / 1세대

- 일반특별공급 세대수

주택형	59.99A	59.99B	59.99C	84.97A	84.99B	84.99C	84.99D	114.66A	114.97B	계
일반 특별공급										
다자녀 무주택 세대주 특별공급	2	1	1	2	1	1	1	1	1	11
신혼부부 특별공급	사용허가시 : 2주 이내									
	2	1	1	2	1	1	1	1	1	11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사용허가시 : 2주 이내									
	2	1	1	2	1	1	1	1	1	11
합계	2	1	1	2	1	1	1	1	1	11

※ 주택형별 특별공급분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받았으며, 배정분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 주택형별 일반공급 주택형과 관련 규칙 제26조 제2항 : 5세대 / 3세대 / 2세대 / 1세대

- 일반특별공급 세대수

주택형	59.99A	59.99B	59.99C	84.97A	84.99B	84.99C	84.99D	114.66A	114.97B	계
일반 특별공급										
다자녀 무주택 세대주 특별공급	2	1	1	2	1	1	1	1	1	11
신혼부부 특별공급	사용허가시 : 2주 이내									
	2	1	1	2	1	1	1	1	1	11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사용허가시 : 2주 이내									
	2	1	1	2	1	1	1	1	1	11
합계	2	1	1	2	1	1	1	1	1	11

- 다자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3호에 따른 다자녀가구 중 미성년자인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해당되며 해당되는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 제출 필요

- 다자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에 따른 신혼부부 중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경우 해당되며 해당되는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 제출 필요

- 노부모 부양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5호에 따른 만 65세 이상의 무주택세대구성원 및 일반시 최대한도 주택청약 주택배정 비율 우선 배정됨

※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결제원 (www.yeskey.or.kr) 또는 주택공급규칙에 대한 유권해석은 국토교통부 (www.molit.go.kr)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과 관련 규칙 제30조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마포구청 주택과 - 27811(2022. 3. 22)로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서울특별시 마포구 용강동 285번지 일대 도시개발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 공급규모 및 내역 : 아파트 지하 3층, 지상 28층 ~ 29층 외 19동 총 563세대(일반 97세대 포함) 중 아파트 일반공급 115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일반) 특별공급 5세대, 다자녀 무주택 세대주 특별공급분 3세대, 신혼부부 특별공급분 2세대,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분 1세대 포함

※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 별첨 참조

주택형	59.99A	59.99B	59.99C	84.97A	84.99B	84.99C	84.99D	114.66A	114.97B	계
일반 특별공급										
다자녀 무주택 세대주 특별공급	2	1	1	2	1	1	1	1	1	11
신혼부부 특별공급	사용허가시 : 2주 이내									
	2	1	1	2	1	1	1	1	1	11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사용허가시 : 2주 이내									
	2	1	1	2	1	1	1	1	1	11
합계	2	1	1	2	1	1	1	1	1	11

-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제2항에 따른 사용허가 시점에 입주자모집공고일(2022. 3. 23) 현재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세대주 중 무주택 세대구성원 및 일반시 최대한도 주택청약 주택배정 비율 우선 배정하며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직계존속에서 세대주 포함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주에게 가장 우선하여 청약 한 1명에 대하여 해당 청약신청자 세대에 해당 주택 1호를 배정함

- 본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1호 가목 및 「주택법」 제2조 제5호 가목에 따른 공공분양주택이다.

- 본 주택은 「주택법」 제2조 제1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 위치하지 않는 지역에 위치하지 않는 민영